

클러스터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4.12.12

개정 2025.10.2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클러스터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각 다음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연구·교육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환경 구축 및 제공
2. 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수립
3. 고성능 컴퓨팅 자원 관리비 징수
4. 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(항온항습기 등) 유지·보수
5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제반 업무 수행

제3조(조직) 센터는 본 대학의 학술정보처에서 운영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정보처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고, 위원은 기획처장, 연구처장, 산학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총장이 임명한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3. 본 규정 시행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고성능 컴퓨팅 자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
5.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5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사용료 징수를 통한 적립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.

제6조(준용 기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시행세칙 등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, 지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2월 12일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